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9
		개정일자	2022.08.01
	소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4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0	2022.08.01	ISO 45001 인증 추진에 따른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안전환경관리부 주 임	안전환경관리부 부 장		대 표 이 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일사(년/월/일)	2022/08/01	2022/08/01		2022/08/01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9
		개정일자	2022.08.01
	소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4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지침서는 당사의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해서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체 화재를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방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및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2 자위 소방대

화재발생 초기 진화 및 소화작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조직, 집단을 말한다.

3.3 위험물

소방법에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3.4 지정수량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소방계획서를 승인한다.

4.2 관리팀장

4.2.1 소방계획서를 검토한다.

4.2.2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4.2.3 소방계획에 의한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 받는다.

4.3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4.3.1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4.3.2 자위소방대를 편성 및 운영한다.

4.3.3 화재사고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4.3.4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4.3.5 소방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3.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 절차

5.1 소방계획서

5.1.1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중으로 작성하여, 관리팀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9
		개정일자	2022.08.01
	소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3 / 4

5.1.2 방화관리자는 승인 된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 교육, 훈련 등을 시행 하도록 한다.

5.2 자위소방대

5.2.1 자위 소방대 편성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및 소화 작업 지원 등을 위해 자위소방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 한다.

대 장

부 대 장

본 부 분 대			소/수방 분대		방호/복구 분대			의료 구호 분대		
지휘반	훈련반	경보반	소화반	급수반	방호조치 및 복구반	경계반	대 피 및 반출반	의료반	방독반	후송반

5.2.2 야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자위 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운영한다.

방화책임자
현장내부선임자

소방대 유도반	초기진화반	통보연락반
사내거주자	최초목격자 당직자 및 사내거주자	사내거주자
1. 공설 소방대의 진입 유도 2. 정보제공 담당	1. 소화기등을 사용 초기 소화 임무	1. 소방기관에 대한 통보 2. 관계자에 연락 (직원연락망 이용)

5.3 자위소방대 임무

5.3.1 자위소방대 부대장은 화재상황의 일괄통제 및 발화통보를 담당한다.

1) 본부분대

- (1) 지휘반 :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을 보조한다.
- (2) 훈련반 : 연간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시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한다.
- (3) 경보반 : 119 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9
		개정일자	2022.08.01
	소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4 / 4

- (4) 소수방분대
- (5) 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소화활동을 담당한다.
- (6) 급수반 : 소방용수의 보존 및 급수활동을 담당한다.
- (7) 방호복구분대
- (8) 대피 및 반출반 :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 반출이동 등을 담당한다.
- (9) 경계반 : 중요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할소방대 유도 등의 일을 담당한다.
- (10) 방호 및 복구반 : 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등 소화활동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복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 (11) 의료구호분대
- (12) 의료반 :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조치를 담당한다.
- (13) 방독반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한다.
- (14) 후송반 : 사망자의 안치 및 질식, 중경상자를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일을 담당한다.

5.4 소방대책위원회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조직으로, 소방대책 위원회의 운영절차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절차서(KMT-P-15)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5.5 화재예방 활동

5.5.1 소방시설 점검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 점검표를 이용하여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5.2 방화관리자는 소화기 점검표를 소화기에 부착하여 월 1회 점검하고, 수신기 점검표를 이용하여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5.5.3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관할 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5.5.4 자체점검 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보완 조치를 취한다.

5.5.5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해야 할 때에는 소방설비 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토록 한다.

5.6 화기 사용 제한

5.6.1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6.2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의 감독자의 지정 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9
		개정일자	2022.08.01
	소방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5 / 4

5.6.3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 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7 소방 교육

5.7.1 관리팀은 소방계획서에 따라 세부일정을 정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자체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 보건 교육일지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5.7.2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을 익히는 훈련을 말한다.

5.7.3 부분훈련 :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을 말한다.

5.7.4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실제 화재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임.)

5.7.5 도상훈련 :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5.7.6 기초부분 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 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 실시 시 개별 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7.7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